

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증진법 제10조」, 「지역보건법 제 6조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1) 입법예고 : 2015. 8월~9월 (20일 이상)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심사대상 아님

4. 행정영향 분석

- 통합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』를 근거로 구성·운영함에 따라
-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·운영 근거였던 『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』는 자치법규의 중복입안으로 법령의 체계성을 저해하는 바, 존치실익이 없는 조례를 정비(폐지)하여 자치법규 입법 체계성 확보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